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0년 4월 일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또는
조례명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와, 한자어 순화 등 용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인용조문 정비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경우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

나.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 일괄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2019.3.20. 폐지)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5) 「물환경보전법」
- 6)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2017.8.2. 폐지)
- 7)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 8) 「항공법」(2017.3.30. 폐지)
- 9)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 교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 홍보정책과, 녹색환경과,
자원순환과, 생활보장과, 안전관리과, 건강관리과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0.2.12. ~3.3.) 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일괄개정 조례안 목록>

연번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개정사유
1	교육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 보호법」 개정 어려운 한자어 정비 (하오 → 오후, 상오 → 오전)
2	교육청소년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 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3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외래어 표기 정비 (센타 → 센터)
4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본식 용어 정비 (계리 → 회계처리)
5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
6	홍보정책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
7	녹색환경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8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폐지
9	생활보장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폐지
10	안전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폐지
11	안전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개정
12	도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 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미연에 → 미리)
13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항공법」 폐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하오”를 “오후”로, “상오”를 “오전”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강서교양대학과”를 “구청장은”으로, “각각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를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규제신고센터”를 “규제신고센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 제목“(계리의 원칙)”을“(회계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리하고”를 “회계처리 하고”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조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버스정류소(「항공법」에 따른 공항교통시설을 말한다)”를 “버스정류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제16조의4제1항제2호”를 “제16조의5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13조 전단 중 “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청소년보호법」 제31조 ----- ----- ----- ----- ----- -----.</p>
<p>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생략) 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u>하오</u> 7시부터 다음날 <u>상오</u>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가능.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p>	<p>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오후</u> ----- ----- <u>오전</u> ----- ----- ----- ----- -----.</p>

2. 서울특별시 강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부수시설) <u>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강서교양대학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 도서관을 각각 평생학습관 안에 설치할 수 있다.</u>	제12조의2(부수시설) <u>구청장은 --- ----- ----- ----- ----- ----- 평생 학습관 ----- ---</u>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u>규제신고센터의 설치</u>)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소속하에 <u>규제신고센터</u> 를 둔다.	제8조(<u>규제신고센터의 설치</u>) --- ----- ----- ----- <u>규제신고센터</u> -----.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9조(<u>계리의 원칙</u>)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제29조(<u>회계처리의 원칙</u>) ① ----- ----- -----

<p>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u>계리</u>하여야 한다.</p> <p>② 공단은 사업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u>계리</u>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p>	<p>-----</p> <p>----- <u>회계처리</u>-----</p> <p>--.</p> <p>② -----</p> <p>----- <u>회계처리</u> 하고, -----</p> <p>-----.</p>
---	---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u>」 제3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45조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어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u> 제12조 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p>	<p>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u>「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 ----- ----- ----- ----- ----- ----- ----- ----- -----.</p>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p>	<p>제1조(목적) ----- ----- · 「물환경보전법」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바지함을 목적으로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강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 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u>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에 의하여 처리하 여야 한다.</p>	<p>----- 제4조(접수 및 처리) ----- ----- ----- -----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u>」 ----- -----.</p>

8.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u>서울 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u>」와 「<u>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p>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 ----- ----- 「<u>서울 특별시 강서구 재무회계 규칙</u>」 ----- -----.</p>

9.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준용) ① 기금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생 략)	제16조(준용) ① -----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 ② (현행과 같음)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② (생 략)	제11조(준용)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생 략) ② 강서구 대책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제10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p>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 ----- 「실내공기질관리법」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	--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6. (생략)</p> <p>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u>미연에</u>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p> <p>8.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 ----- ----- ----- ----- ----- ----- ----- ----- <u>미리</u> ----- ----- -----.</p> <p>8. (현행과 같음)</p>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구 관할 구역 내 버스정류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를 말한다.) 및 공항 내 <u>버스정류소</u>(「항공법」에 따른 <u>공항교통시설</u>을 말한다)</p> <p>5.·6. (생략)</p>	<p>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버스정류소</u></p> <p>5.·6. (현행과 같음)</p>
<p>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16조의4제1항제2호</u>에 따른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p> <p>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p>	<p>제11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 ----- ----- ----- ----- -----.</p> <p>1. ----- ----- <u>제16조의5제1항제2호</u>----- -----</p> <p>2. -----</p>

원 추천서(영 제16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 ⑤ (생략)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 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의5제1항 제1호-----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과장 김정걸

(담당 : 행정7급 신주용 / ☎ 2600-6317)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인용 법령 또는 조례명 등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와 한자어 순화 등 용어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 주요내용

- 관계 법령 인용조문 정비
 -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의 제명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경우 현행법령에 맞게 일괄 정비
- 용어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 일괄 정비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등 법령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0 - 3				
자치법규명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및 규칙 일괄 개정」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 급	행정7급	성 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기획예산과	통보(조치)일		2020. 3. 2.	
관련조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0A서울강서003			
정책명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기획예산과		
	담당자명	신주용	전화번호	02-2600-6061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0년 02월 14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0년 02월 21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02월 24일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19. 12. 12] [법률 제15913호, 2018. 12. 11, 일부개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3. 20.]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226호, 2019. 3. 20, 폐지]

○ **폐지이유:** 평생학습관 기능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는 ‘강서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과 ‘강서교양대학’ 을 통합 운영 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5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3459호, 2015. 8. 11.>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24호, 2020. 1. 7, 일부개정]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94호, 2017. 12. 12, 일부개정]

부칙 <제14532호, 2017. 1. 17.>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6. 4] [대통령령 제29799호, 2019. 6. 4, 일부개정]

부칙 <제26980호, 2016. 2. 12.>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

[시행 2017. 8. 2.]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127호, 2017. 8. 2., 폐지]

부칙(2017. 8.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 폐지이유

- 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관련 규정 외에는 존치 실효성이 없는 「강서구 재정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대신,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강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 나. 기능이 유사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위원회 정비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2020. 4. 3.] [법률 제16307호, 2019. 4.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3601호, 2015. 12. 22.>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항공법 [시행 2017. 3. 30] [법률 제14116호, 2016. 3. 29, 타법폐지].

부칙 <제14116호, 2016. 3. 29.> (항공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건강·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